

- 2004. 12. 30. 경 상도동 박인회의 부친 집에 보관되어 있던 도청테이프 복사본을 박인회가 이상호 기자에게 전달하고, 이 기자는 이를 복사한 후 다음날 박인회에게 테이프 반환

2. 언론사 도청테이프 내용 보도 부분

□ 언론 보도 내용

- X파일 관련 보도 경과

- 데일리서프라이즈가 2005. 6. 8. 'MBC와 이상호 기자는 침묵을 깰 때'라는 기사로 'X파일' 관련 최초 보도
- 조선일보는 7. 21. '안기부, YS정부 때 비밀조직 운영, 불법 도청'이라는 제목으로 X파일의 실체를 폭로
- 7. 21. MBC 뉴스에 대한 방송금지가처분 결정이 있었음에도 MBC와 KBS에서 'X파일' 내용을 보도한 이래 각 언론사들이 경쟁적으로 'X파일' 내용을 보도

- MBC 보도 내용

- MBC는 'X파일'을 최초로 입수한 언론사로서 타 언론사에 비해 'X파일' 관련 보도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였고, 보도 첫날 도청대상자를 익명으로 하였지만, 홍석현 당시 주미

대사·이학수 삼성그룹 부회장이 가처분신청을 하였다는 내용과 이와 관련된 홍석현 대사의 인터뷰기사를 보도해 도청 대상자를 처음부터 사실상 공개

- 또한, 시사프로그램 '시사매거진 2580'은(40분간) 7. 24.자 방송에서 전체 3개 주제를 모두 'X파일'과 관련하여 보도

○ 월간조선 보도내용

- 8. 17. 발간된 9월호에 'X파일' 도청테이프 녹취록 전문과 3건의 안기부 녹취보고서 전문을 그대로 게재하여 보도

□ 보도 경위

○ MBC

- 2004. 12. 이상호 기자가 박인회로부터 녹취문건을 입수하고, 테이프의 추가 입수를 위해 미국에 가면서 담당 부장 및 국장에게 보고하였고, 국장이 12. 23. 사장에게 개괄적 내용 보고
- 2005. 3. 특별취재팀을 구성하였으나 통신비밀보호법 등 법적 문제가 있다는 검토 결과에 따라 보도 자제
- MBC 노조 등이 방송 요구를 하고, 7. 21. 타언론사에서 그 내용이 보도됨에 따라 보도에 이른 것이고, 보도여부는 당시 보도국장이 결정

○ 월간조선

- 2005. 6. 이전 송○○ 차장이 국내 방송사 기자로부터 녹취록과 녹취보고서 입수
- 2005. 8. 김연광 편집장이 사장과 협의하여 녹취보고서 및 녹취록 공개기사를 게재하기로 결정하고, 김연광 편집장이 2쪽 분량의 관련 기사 및 '편집자註'를 직접 작성

□ MBC와 월간조선 보도의 위법성

○ 통신비밀보호법위반에 해당

- 안기부 불법도청 행위로 취득한 결과물인 情을 알면서 내용을 보도하는 행위는 통신비밀보호법 제16조 제1항 제2호에 해당
- * 언론·출판은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해서는 아니됨 (헌법 제21조 제4항)

○ MBC와 월간조선은 실정법 위반 행위를 인식하고도 위반행위를 한 것임

- MBC는 박인희의 불법도청테이프 유출 범행의 직접 상대방으로 취득과정에서 금품제공을 약속한 사실이 있고, 법원의 방송금지가처분을 무시하고 방송하는 등 비난가능성이 큼

- 월간조선은 녹취보고서 및 녹취록을 게재할 경우 통신비밀 보호법위반이 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다른 언론사와는 달리 전문을 게재
- 향후 동일 유사행위 반복 가능성 차단 필요
 - 아무런 법적제재를 하지 않을 경우 이것이 선례가 되어 향후 알권리 등을 이유로 도청 결과물 등을 무분별하게 보도 하더라도 의법조치 곤란
- 사법처리를 요구하는 공익단체의 진정 제기
 - 서울지방변호사회는 MBC 뉴스 보도책임자 및 취재기자, 월간조선 보도책임자에 대하여 수사촉구 진정서 제출 (8. 23.)

□ 이상호 기자의 녹취보고서 조작 의혹

- 의혹 요지
 - MBC는 안기부 녹취보고서 내용 중 기아차 문제와 관련하여, 7. 22. 보도에는 “여당 후보가 삼성의 기아차 인수를 도와 주겠다”고 말한 것으로 보도하였다가, 타 언론사에서 보도 내용이 잘못되었다고 지적하자, 7. 27. 보도에는 “야당 후보”가 위 발언을 하였다고 정정보도 하면서, 녹취보고서의 내용과 녹음테이프의 내용이 달랐기 때문이라고 해명하여,

- 이상호 기자가 박인희로부터 받은 녹취보고서 중 김대중 전 대통령 관련 부분을 고의로 누락하고, 기아차 인수 관련 발언을 이회창 후보가 한 것처럼 허위보도를 하였다는 의혹이 제기됨

○ 수사 결과

- MBC로부터 녹취보고서를 제출받아 압수한 원본과 대조한 결과, 김대중 전 대통령, 이인제 후보와 관련된 2쪽 분량이 녹취보고서에서 빠져있어 마치 이회창 후보가 “기아자동차 인수를 도와주겠다”는 발언을 한 것처럼 되어 있음
- 이상호 기자는 박인희로부터 2쪽 분량이 빠진 상태로 받았다고 주장하고, 박인희도 복사 과정에서 빠졌다고 진술하며, 박인희가 미국에 보관하다 검찰에 제출한 보고서에도 같은 부분이 빠져 있는 점에 비추어 이상호 기자가 고의로 누락하지는 않은 것으로 확인됨
- 그러나, 이상호 기자는 보도 준비를 위해 도청테이프 내용을 수회 들어보아 기아자동차 관련 발언 주체가 누구인지 인식할 수 있었던 점, 검찰 조사시 자신도 야당 후보의 연계를 알고 있었으나 여당 후보가 연루된 것 또한 사실이므로 그렇게 보도한 것이라고 변명하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사실편향적인 보도를 한 점은 인정됨

3. 노회찬 의원 도청테이프 내용 공개 부분

□ 내용 공개 실태

- 2005. 8. 18.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라고 함)에서 질의할 예정인 'X파일' 관련 질의내용을 보도자료 형태로 자신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면서 'X파일' 내용의 일부를 그대로 공개
 - 법사위에서 실제로 발언한 시간은 8. 18. 18:00경인데, 인터넷에 보도자료를 게재한 시간은 같은 날 09:30경임
- 'X파일' 내용 중 홍석현 사장과 이학수 비서실장간에 '97년 추석 명절 촌지를 전달하기로 상의'하는 대화내용을 그대로 공개하면서 전·현직 검찰간부 7명의 실명을 게재
 - 인터넷 보도자료에 게재되었던 안○○, 김○○ 변호사의 실명은 실제 법사위에서는 거론하지 않았음

□ 관련 고소·진정 사건 현황

- 서울지방변호사회, 2005. 8. 23. 통신비밀보호법위반 혐의로 수사촉구 진정서 제출
- 안강민 변호사, 2005. 9. 25.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장 제출

□ 수사 상황

- 노회찬 의원은 국회일정 등으로 현재까지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나, 빠른 시간내에 조사를 완료하고 혐의유무에 대해 판단하여 처리할 예정임

4. 한나라당 의원 불법감청 문건 공개 부분

□ 2002년 한나라당 공개 문건은 국정원 불법감청 문건임

- 2002. 11. 28. 김영일 전 의원(23건), 12. 1. 이부영 전 의원(16건)이 각 국정원 도청 문건이라면서 총 39건을 폭로
- 본건 수사 결과, 위 39건의 문건은 대부분 국정원에서 불법 감청한 것임이 확인되었음
 - 위 39건의 문건 중 13건이 도청문건이라고 국정원 직원들이 명확히 진술하고 있고, 나머지 문건들도 내용 등에 비추어 국정원 불법감청 문건으로 보인다고 진술
 - 위 문건 폭로 당시 관계자들이 도청사실을 부인하고, 한나라당측에서도 제보자 신원확인 등 수사에 협조하지 않아 증거를 확보하지 못하였으나 이번 수사를 통해 국정원 직원들의 자백으로 혐의 인정

※ 관련 고소·고발사건 중 한나라당에서 신간 원장을 불법감청 혐의로 고소한 사건은 그 내용이 사실로 밝혀졌으므로 재기하여 병합기소

□ 위 문건의 유출경위 등에 대하여 계속 수사 필요

- 문건 유출 및 한나라당의 입수 경위 등을 파악하기 위해서 관련부서 직원들 대부분에 대하여 엄중 조사하였으나 모두 여전히 유출 관련 사실을 일체 부인하고 있고, 관련 자료도 남아 있지 않아 국정원을 상대로 한 유출자 색출에는 어려움이 많은 상황임.
- 현 상황 하에서 국정원 도청자료 유출의 진상을 밝히기 위하여는 자료를 제출 받은 쪽의 수사 협조가 매우 긴요한 진상규명 방안인 것으로 판단됨
- 따라서 위 자료를 입수·폭로한 한나라당측 관계자들에 대한 수사가 불가피한 상황인데, 한나라당측 폭로관계자들이 검찰 소환에 불응하고 있어 수사의 진척이 없으나 빠른 시간 내에 조사를 완료하고 진상을 규명할 예정임

5. 관련 의혹 사항

□ 공운영이 국정원을 협박하고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

○ 의혹 요지

- 언론과 국사모(국정원을 사랑하는 모임) 대표 송○○ 등, 공운영이 국정원에 도청테이프를 반납하는 조건으로 국정원을 협박하여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 제기

○ 수사 결과

- 국정원이 공운영의 (주)온세통신 영업대리점을 통해 시외전화 회선 중 일부분(시외 중계구간)을 한국통신에서 온세통신으로 변경한 것은 사실이나,
- 이○○ 감찰실장은 테이프 반납에 자진하여 협조한 점을 참작하여 전직직원 관리 차원에서 도와준 것이라고 주장하고, 국정원 실무자 등도 시외전화 회선 변경 과정에 하자는 없었다고 진술하며,
- 회선 변경으로 한달에 20만원 가량이 수수료로 지급될 따름 이어서 특혜라고 보기 어렵고, 당초 의혹을 제기한 송○○도 추정에 의한 주장이라고 진술하는 등 협박에 의해 특혜를 받은 사실은 없는 것으로 확인됨

□ 박지원 장관 상대 청탁 의혹

○ 의혹 요지

- 언론 등에서 박인회가 공운영으로부터 받은 도청테이프를 이용하여 박지원 전 문광부장관을 상대로 임○○의 국정원 복직 청탁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별도로 관광공사 사업청탁을 하였다는 의혹 제기

○ 수사 결과

- 박인회가 박지원 전 장관에게 임○○의 국정원 복직을 부탁하면서 공운영으로부터 받은 녹취보고서 3점을 건넨 사실이 있으나, 박지원 장관이 천용택 국정원장에게 녹취보고서 유출 사실을 신고하면서 복직은 무산되었고,
- 박인회는 같은 기회에 박지원 장관에게 평소 알고 지내던 이○○의 관광공사 사업 청탁을 하였고, 박 장관의 도움으로 이득렬 관광공사 사장을 만나 관광공사 수입통관대행 관련 사업을 추진한 사실은 있으나 사업은 성사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됨

※ 박지원 장관은 인사청탁을 받은 사실은 있으나 관광공사 사업 청탁을 받은 사실은 없다고 진술

□ 중앙일보 상대 도청테이프 거래 의혹

○ 의혹 요지

- 일부 언론에서 누군가가 50여개의 도청녹취록 목록을 가지고 중앙일보를 찾아가 거래를 시도하였다는 의혹 제기

○ 수사 결과

- 의혹을 제기한 언론이 동 의혹내용에 대해 사실확인을 해 준 것으로 지목한 길○○ 중앙일보 이사는 의혹 사항에 대해 아는 것이 없고, 언론사 기자와 전화통화를 한 사실은 있지만 자신이 진술한 내용의 일부만 발췌하여 왜곡 보도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 공운영, 박인희 등 관련자들도 의혹 사항에 대해 모두 부인하고 있는 등 의혹사항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됨

□ 국정원에서 금년 초 X파일을 입수하였다는 의혹

○ 의혹 요지

- 일부 언론에서 국정원이 금년 초 X파일을 이미 입수하였다는 의혹을 제기

○ 수사 결과

- 국정원이 성문분석 의뢰를 하였다고 지목된 한국법음향 연구소 압수수색 결과 MBC에서 성문분석 의뢰를 한 자료는 발견되었으나, 국정원과 관련된 자료는 전혀 없었고,
- 또한 국정원이 한전산업개발의 명의를 빌려 성문분석 계약을 하였다고 의혹이 제기되었으나, 한전산업개발 명의의 계약은 동 회사와 관련된 뉴스에 삽입된 목소리의 성문분석을 의뢰한 것으로 X파일과는 무관한 것으로 확인됨

V. 'X파일' 内容 關聯 告發 事件

1. 수사 원칙

□ 도청자료 내용수사 논란

- 언론에 그 내용이 공개된 'X파일' 및 전 미림팀장 공운영의 집에서 압수된 테이프 274개와 관련 녹취보고서 13권은 모두 국가기관의 도청 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자료임
- 공개되지 않은 타인간의 대화를 불법도청한 자료는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로서 통신비밀보호법 제14조 제2항, 제4조에 의해 증거능력이 배제됨은 이견이 없음
- 그러나, 도청테이프 등의 내용 수사에 대하여는, 이를 수사의 단서로 사용할 수 있고, 최소한 언론에 공개된 'X파일'의 내용 수사는 가능하다는 주장과, 반대로 도청테이프 등의 내용수사는 피해자에 대한 이중의 인권침해이므로 불가하다는 주장이 맞섰음

□ 관련 법리 논쟁

- 수사착수가 가능하다는 견해
 - 위법수집증거 배제법칙 및 독수독과 이론은 수사기관이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의 증거능력을 배제하기 위해 도입된 이론

인데 본건 도청자료는 수사기관이 아닌 전 안기부 직원이 수집한 것이므로 위 이론들은 적용될 여지가 없고,

- 통신비밀보호법에 의해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도청자료로부터 새로이 새로이 수집한 2차 증거는 형사소송법상의 증거법칙에 따라 증거능력이 인정될 수 있는 것이므로 도청 자료를 수사의 단서로 활용하는 것은 무방하며,
- 독수독과 이론은 대법원 판례가 이를 인정하지 않고 있고, 독수독과 이론의 예외이론에 의해 충분히 합법적인 새로운 증거를 수집할 수 있다는 것이므로 내용 수사 가능

○ 수사착수가 불가능하다는 견해

- 테이프 등 내용에 대한 수사착수는 결국 수사 대상인 내용의 공개로 귀결되므로 도청 내용의 공개를 금지한 통신비밀 보호법위반의 소지가 있고,
- 불법도청자료는 위법수집 증거로 독수독과 이론에 의해 이를 단서로 하여 취득한 증거 역시 증거능력이 배척되므로 수사에 착수함이 부적절함
- 당사자가 자의로 자백하는 경우 외에 독수독과 이론의 예외에 해당하는 경우를 상정하기 곤란하고, 자의에 의한 자백은 기대하기 어려움

□ 검찰의 도청자료 내용수사 관련 입장

- 검찰은 도청자료 내용수사에 관한 위와 같은 법리 논쟁과 학계 등의 다양한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 도청자료의 공개와 증거사용을 금지하고 있는 현행 통신비밀보호법상의 제약과 공소시효 문제 등 다음과 같은 이유로 특단의 사유가 없는 한 “도청자료 내용수사는 불가하다”라는 결론에 도달함
- 수사의 상당성 결여
 - 범죄행위의 결과물을 이용하여 범죄행위의 피해자를 수사하는 것은 불법행위를 정당화하는 결과를 야기하여 정의롭지 못한 결과를 초래하고,
- ※ 도청자료를 근거로 수사할 경우, 극단적인 상황에 처한 자들이 경제적·사회적 이익을 목적으로 통신비밀보호법위반 처벌을 감수하면서 도청행위를 감행한 후 그 내용에 따라 도청 피해자들을 조사하라는 부당한 요구가 가능하게 되는 등으로 도청풍조 만연 우려
- 불법도청자료에 대화당사자로 거명되는 사람들은 국가기관에 의하여 사생활의 비밀이 1차적으로 침해된 피해자들인데, 이들에 대해 다시 수사에 착수하여 그 대화 내용을 공개하거나 형사처벌을 한다면 이는 도청 피해자에 대한 이중의 기본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할 것임

○ 수사로 인한 폐해

- 이건 도청대상이 되었던 식당에서 음주 환담하는 내용들은 대부분 지극히 사적인 대화인데, 이러한 내용도 수사 착수 시 바로 공개될 우려가 있어 관련자들의 심각한 명예훼손이 예상되며,
 - 대화에 등장하는 풍설·풍문에 대하여는 증거법상 그 진위에 대한 사실입증이 곤란하여 수사 착수가 오히려 국민적 의혹만 증폭시켜 사회적 갈등을 야기할 것임
- ※ 또한 공운영은 도청 사실이 공개될 경우 국익에 심대한 손상을 가져올 우려가 있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고 진술

○ 수사의 실익이 없음

- 가사, 내용 수사가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압수된 도청자료는 1998. 2. 이전의 자료로서 대화내용 중 범죄행위가 포함된 경우에도 대부분 이미 공소시효가 완성되었고,
- 공소시효가 남아있다 하더라도 7년 이상 경과된 사건들로 현 단계에서 증거 수집의 어려움이 예상되고, 당사자가 자백하지 않는 한 사실상 다른 수사방법이 없는 상황임

※ 실제로 이번에 고발된 사건의 경우도 관련자들이 협의를 전면 부인

○ 그러나 내란, 살인 등 중대한 범죄로서 공소시효가 남아 있음이 명백하고, 다른 관련 자료에 의해 수사의 필요성이 있으면 수사 검토 가능

- 소위 'X파일'의 경우, 언론에 그 내용이 공개되어 있기는 하지만 불법 도청테이프임에는 변함이 없으므로 도청자료를 수사 단서로 사용하지 않는다는 원칙은 'X파일'의 경우에도 예외 없이 적용함이 타당
 - 다만, 관련 고소 · 고발사건이 접수 되었으므로 검찰로서는 통상의 사건 절차에 따라 수사하되, 수사에 최선을 다한다는 입장 하에서 'X파일' 내용 외에 별도의 독립된 수사 단서가 있는 부분에 대하여 철저히 수사한다는 원칙을 견지하였음

2. 관련 고발 사건 현황

- 참여연대, 7. 25. 서울중앙지검에 'X파일' 내용과 관련하여 이회창 당시 한나라당 후보,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 전 · 현직 검사 등 20여명 고발
 - 이회창, 이회성, 고흥길, 서상목 등은 1997.경 이건희 등으로 부터 100억원의 뇌물수수, 특가법(뇌물)
 - 전 · 현직 검찰 고위 간부 및 법무부 간부 10명은 1997.경 및 그 이전과 이후 각 5,000만원 이상 뇌물수수, 특가법(뇌물)
 - '97년 당시 여야 대선 후보 및 여야 국회의원은 1997.경 각 수억원의 뇌물수수, 특가법(뇌물)

- '97년 당시 경제부총리는 1997.경 기아차 처리 관련 3,000만원 내지 5,000만원 뇌물수수, 특가법(뇌물)
 - 이건희, 이학수, 홍석현 등은 1997.경 위와 같은 뇌물제공 및 위 각 금원 불법조성, 특경가법(횡령) 등
※ 법리상 단순뇌물수수죄나 횡령죄로 의율함이 상당한 부분에 대하여 특가법상 뇌물수수죄, 특경가법상 횡령죄로 의율하여 고발하였으나, 고소·고발사건의 경우 고소·고발인이 주장하는 사실관계를 근거로 판단하는 수사 실무례에 따라 이 사건도 고발된 사실을 근거로 판단
-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 8. 3. 경찰에 전·현직 검사 10명을 참여연대와 동일한 내용으로 고발
 - 민주노총·기아차노조, 9. 1. 서울중앙지검에 강경식 전 경제부총리·이건희 회장에 대해 참여연대와 동일한 내용으로 고발

3. 제15대 대선자금 관련 부분

가. 한나라당 후보 관련

□ 고발 요지

- 피고발인 이회창, 이회성, 고흥길, 서상목은 공모하여,
 - 1997.경 이건희회장 등으로부터 '97년 신한국당 대통령후보로

서 뇌물 30억원을 경선자금 명목, 그 후 대통령선거 자금 명목으로 18억원, 11억원, 30억원을 순차로 제공받아 뇌물 수수

※ 고흥길은 18억 수수에, 서상복은 11억 수수에 관여한 것으로 주장

□ 수사 상황

- 고발내용은 전적으로 언론에 보도된 'X파일' 내용을 근거로 한 것이고, 고발인이 언론 보도내용 외에 별도의 증거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으나,
- 1998년 검찰의 세풍사건 수사에서 이회창 후보의 동생 이회성 에너지경제연구원 고문이 김○○ 재무팀장 등 삼성측으로부터 60억원을 받았다는 진술이 있고, 위 김○○ 팀장은 수표로 10억원을 제공하였다는 진술이 있어 위 수사자료를 수사 단서로 하여 고발내용에 대해 수사 착수

□ 수사 결과

- 관련자 진술 내용

- 이회성씨는 1997. 9. 초순경부터 11.경까지 압구정동 현대아파트 주차장에서 삼성의 김○○ 재무팀장 또는 그가 보낸 사람으로부터 3~4회에 걸쳐 30억원~40억원을 수수하였고, 돈을 받을 당시 홍석현 사장은 없었으며, 세풍사건 당시 60억원을 수수하였다고 진술한 것은 공소사실이 아니라고 하여 피곤한 상태

에서 대충 답변하였고, 법정에서도 수사과정에서의 진술을 그대로 인정한 것뿐이라고 진술

- 삼성의 김○○ 재무팀장은 1997. 8.경 이학수 비서실장의 지시로 이회성씨를 만났을 때 몇십억을 요구하는 느낌을 받고 이학수 실장에게 보고하자 이학수 실장이 자금을 전달할 것을 지시하여, 1997. 9.경부터 10.경까지 4회에 걸쳐 이회성씨에게 40억원~50억원을 전달하였고, 위 자금은 이건희 회장의 개인 자금이며, 세풍사건 수사당시 계열사 기밀비 10억원을 제공 하였다고 진술한 것은 이건희 회장의 관련성을 차단하기 위한 것이라고 진술하고, 이학수 부회장도 같은 취지로 진술
- 이회성 고문, 이학수 부회장, 김○○ 팀장등 관련자들의 진술에 의할 때 이회창 후보의 동생인 이회성씨가 삼성측으로부터 40억원~50억원을 제공받은 사실은 인정됨
※ 세풍사건 수사 당시 삼성측에서는 10억원 제공 사실만 자백하였으나, 이 사건 수사에서는 40억원~50억원(정확한 액수는 자금 관리 담당자 박○○의 사망으로 확인 곤란)을 제공하였다고 인정
- 이 부분은 사안의 성격상 정치자금법위반으로 의율할 사안으로 고발내용이 모두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정치자금법 개정 (1997. 11.) 이전의 행위로 처벌이 불가하거나, 공소시효가 완성되었고, 고발인이 주장하는 뇌물혐의에 대하여는 대가성을 인정할 증거가 없음

※ 당초 고발인은 이회창 후보가 “기아자동차를 삼성그룹이 인수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시적으로 언급하였다”고 고발장에 기재하였으나, 위 고발내용은 MBC 뉴스 보도를 근거로 한 것인데, 위 기아자동차 관련 내용은 이회창 후보가 한 발언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어 MBC에서 정정 보도를 한 사실이 있음

나. 기타 대선 후보 관련

□ 고발 요지

- 피고발인 야당 대통령후보(김대중 전 대통령)는 1997.경 이건희 회장 등으로부터 수억원 이상의 뇌물 수수
- 피고발인 '97년 신한국당 대통령 후보 경선에 참여할 것으로 예상되는 여당 정치인(이인제, 이홍구, 이수성, 박찬종)은 1997.경 이건희 회장 등으로부터 3억원 내지 10억원의 뇌물 수수

□ 수사 상황

- 고발내용은 전적으로 언론에 보도된 ‘X파일’ 내용을 근거로 한 것이고, 고발인이 언론 보도내용 외에 별도의 증거자료를 제출하지 않았으나,
- 김대중 전 대통령의 경우 천용택 전 국정원장이 1999. 12. 15. 법조출입기자 간담회에서 “김대중 전 대통령 금품수수” 발언을 하여 이를 수사 단서로 고발내용에 대해 사실 확인

□ 수사 결과

- 피고발인 김대중 전 대통령과 관련하여,
 - 천용택 전 국정원장, 홍석현 사장의 진술에 의하면 김대중 전 대통령이 정치자금법 개정 이후에는 홍석현 사장으로부터 정치자금을 제공받았다고 볼 아무런 자료도 없음
 - ※ 천용택 원장은 1999. 12. 15. 기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김대중 대통령이 서경원으로부터 1만불을 받을 사람이 아닌 점을 설명하면서 정치자금법 개정 이후에는 삼성에서 홍석현을 통해 보낸 금품을 받지 않았다고 말한 것이 와전된 것이라고 진술
 - 가사 법 개정 이전에 정치자금을 수령하였다 하더라도 당시에는 순수한 정치자금 수수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이 없었고,
 - 김대중 전 대통령은 당시 공무원이 아니었고, 가사 금품이 제공되었다 하더라도 사전수뢰죄의 대가성이 인정되기 위한 구체적인 청탁이 있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음
- ※ 2002년도 대선자금 수사 과정에서도 대가성이 인정되지 않는 관련자들은 뇌물죄가 아닌 정치자금법위반으로 의율한 바 있음
- 피고발인 '97년 당시 여당 정치인(이인제, 이홍구, 이수성, 박찬종)은 금품을 전달받은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음

4. 검사 촌지수수 부분

□ 고발 요지

- 전직 법무부장관 K씨·C씨, 전 법무부차관 H씨, 모 지청 차장검사 K씨, 모 지검 부장검사 H씨 등을 포함한 성명불상 전·현직 검사 및 법무부간부 10여명은 이건희 회장 등으로부터 1997.경 또는 그 이전과 이후에도 계속 검사의 직무와 관련하여 매회 500만원 내지 2,000만원의 금원을 수차례 수수하여 각 합계 5,000만원 이상의 뇌물 수수

□ 수사 상황

- 고발내용은 전적으로 언론에 보도된 'X파일' 내용을 근거로 한 것이나, 노회찬 의원의 'X파일' 내용 폭로와 관련하여 안강민전 검사장이 명예훼손으로 고소함에 따라 위 고소사건과 관련하여 폭로내용의 진위 여부 확인을 위해 수사에 착수
- 한편,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이 경찰에 제기한 고발사건에 대하여는 검찰에서 수사중인 참여연대 고발사건과 병합하기 위하여 송치명령 하여 병합수사

□ 수사 결과

- 금품 제공자로 지목된 홍석현 사장, 이학수 부회장은 오래된 일이라서 대화내용을 기억할 수 없으나, 그동안 검사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사실은 전혀 없다고 극구 부인하고 있고, 이른바 '정고문'으로 거론된 정○○도 촌지 제공대상자안을 작성하거나 금품을 전달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금품 수령자로 고발된 검찰 간부들 역시 금품수령 사실을 부인하고 있으며, 달리 금품을 수수한 사실을 인정할 증거 없음
- 고발내용은 피고발인들이 수년에 걸쳐 명절에 매회 500만원 내지 2,000만원의 금품을 수차례 수수하여 각 합계 5,000만원 이상을 받았다는 것이나, 그 자체가 추측에 불과하고,
- 5,000만원 이상의 뇌물을 수수하여야 특가법위반죄(공소시효 10년)에 해당하나, 고발내용 자체에 의하더라도 매회 받은 금품은 5,000만원에 이르지 않아 특가법위반죄에 해당하지 않고 단순뇌물죄에 해당하며, 단순뇌물죄의 경우에는 이미 공소시효(5년)가 완성되어 처벌대상이 될 수 없음

※ 김○○ 전 법무부장관의 경우 고발내용 자체에 의하더라도 당시 신분이 공무원이 아니어서 법리상 혐의없음이 명백함

5. 전 경제부총리 뇌물수수 부분

□ 고발 요지

- 피고발인 강경식 전 경제부총리는 1997.경 이건희 회장등으로부터 경제정책 수립 및 기아자동차 부실문제 처리에 있어 삼성에게 유리하게 해 달라는 뜻의 포괄적 대가성이 있는 3,000만원 내지 5,000만원의 뇌물 수수

□ 수사 결과

- 1998년 환란사건 기록 중 기아자동차와 관련된 부분의 수사 기록을 전면 재검토하였지만 피고발인의 금품수수에 대한 별도의 수사단서가 전혀 없었고, 이학수 부회장·홍석현 전 사장이 모두 금품제공 사실을 부인하고 있어 달리 피고발인이 금품을 수수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음

6. 이건희 회장 등 횡령 및 뇌물공여 부분

□ 고발 요지

- 피고발인 이건희, 이학수, 홍석현은 공모하여 1997.경 삼성 그룹 계열사 자금 100억원을 횡령하여 '97년 여야대선후보와 전·현직 검사, 경제부총리 등에게 뇌물 제공

□ 수사 상황

- 고발내용은 전적으로 언론에 보도된 'X파일' 내용을 근거로 한 추측에 의한 것이다,
- 앞에서 본 바와 같이 1998년 검찰의 세풍사건 수사에서 김○○ 재무팀장이 이회성씨에게 제공한 10억원의 출처와 관련하여 '삼성의 5~6개 계열사 기밀비'라고 진술한 사실이 있어 이를 수사단서로 하여 수사에 착수
- 이에 따라 피고발인 이학수 부회장을 비롯한 당시 삼성그룹 비서실 김○○ 재무팀장(현 구조본부 차장), 최○○ 과장 및 현재 이건희 회장 개인재산을 관리하는 전○○ 등 당시 삼성그룹 재무팀 핵심 관련자 전원을 조사하고(박○○상무는 사망하여 미조사), 기업 규모로 볼 때 자금 양출이 가능하였을 삼성그룹 16개 계열사의 회계담당 직원 16명을 조사하는 등 연인원 31명을 상대로 면밀히 조사하고, 삼성전자 등 16개 계열사의 일자별 보조부, 삼성코닝 등 21개 계열사에 대한 재무제표 감사보고서, 정치자금 기부내역 등 관련자료(총 14박스 분량)을 제출받아 철저히 확인하였으며,
- 그 조사결과를 토대로 미국에 체류 중인 피고발인 이건희 회장에 대하여 85개 항목에 이르는 서면조사까지 하는 등 실체 확인을 위해 노력하였음

□ 수사 결과

- 관련자 진술 내용 및 자료 검토 내용
 - 이건희 회장, 이학수 부회장, 김○○ 재무팀장 등은 1997. 당시 제공된 자금이 이건희 회장 개인자금이고, 위 김○○이 세풍 사건 수사 당시 “계열사 기밀비”라고 진술한 것은 이건희 회장의 관련성을 차단하기 위한 것이나, 사실은 계열사 자금을 횡령한 사실은 없다고 진술
 - ※ 김○○의 세풍사건 수사 당시 진술을 그대로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당시 10억원을 계열사 기밀비로 처리하였다고 진술하였으므로 단순 횡령으로서 이미 공소시효가 완성됨
 - ※ 일부 언론에서는 세풍사건 수사 당시 김○○ 재무팀장이 60억원을 제공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가 이번 수사에서 40~50억원으로 진술을 번복한 것처럼 보도하고 있으나, 위 김○○은 세풍사건 수사 당시 10억원을 제공한 사실만 인정하였음
 - 또한 위 김○○은 1995. 노태우 비자금사건 당시 이건희 회장이 회사자금을 제공한 사실 때문에 뇌물공여죄로 처벌 받은 전례로 인하여 그 후부터는 회사자금 대신 이건희 회장 개인자금을 활용하도록 방침을 설정하였다고 진술
 - ※ 2002. 대선자금 수사 당시에도 이건희 회장 개인자금으로 385억원을 제공하였다고 주장

- 현재 이건희 회장의 개인재산을 관리하는 삼성임원 전○○은, 1997.경 당시 이건희 회장의 개인재산을 관리하던 박○○ 상무가 사망하여 정확한 내역을 알기는 어려우나, 당시 이건희 회장의 재산은 주식이나 부동산 외에도, 현금이나 즉시 현금화가 가능한 무기명 채권 또는 예금 형태로 900억원 정도를 관리하였고, 그 중 40~50억원을 제공한 것으로 알고 있으며, 그 구체적인 서류상 근거는 없지만, 1997년 당시 입출금 규모가 수백억원에 이르렀으므로 보유하고 있던 현금과, 인출된 현금을 합하여 제공한 것으로 보이며, 정치자금을 제공한 시점에 동일한 액수를 출금한 것이 아니라 사전에 현금으로 출금하여 보관하고 있던 것을 제공한 것으로 추측 된다고 진술
- 삼성그룹 주식배당 관련 서류, 주식매각 대금·배당금·토지 보상금 내역 및 위 금원이 입금된 이건희 회장 개인명의 통장 등에 의해 이건희 회장 개인자금의 조성 경위 및 규모를 확인하였고,
- 1997. 당시 삼성그룹 계열사의 재무제표 등 회계장부를 임의 제출 받고, 16개 계열사의 회계담당자를 조사한 결과, 계열사 자금을 횡령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는 없었고, 개괄적 거래내역만 표시된 전산입력 자료만 잔존하며, 전표 및 증빙 자료는 보존기간 경과로 폐기되었음

- 따라서, 횡령의 점은 자금출처가 이건희 회장 개인자금이 아니고 계열사 자금을 유용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뇌물공여의 점은 대가성 여부를 떠나 공소시효가 완성됨

VI. 事件 處理 現況 및 向後 搜查 事項

1. 사건 처리 현황

가. 국정원 · 안기부 도 · 감청 사건

순번	성명(연령)	직업	죄명	처분내용
1	임동원 (71세)	전 국정원장	통신비밀보호법위반	12. 2. 구속구공판
2	신 건 (64세)	전 국정원장	통신비밀보호법위반	12. 2. 구속구공판
3	김은성 (60세)	전 국정원차장	통신비밀보호법위반	10. 26. 구속구공판
4	이수일 (62세)	전 국정원차장	통신비밀보호법위반	12. 14. 공소권없음
5	김○○ (61세)	전 국정원 8국장	통신비밀보호법위반	12. 14. 기소유예
6	김○○ (62세)	전 국정원 운영단장	통신비밀보호법위반	12. 14. 기소유예
7	박○○ (64세)	전 국정원 국내수집과장	통신비밀보호법위반	12. 14. 기소유예

□ 기타 관련자 처리 현황

【국정원 전화감청 관련】

- 불법 감청에 관여한 국정원 직원 및 불법 감청을 도와준 전화국 직원이 사법처리 대상이 될 수 있음

- 국정원의 국장급 이하 직원들에 대하여는 국정원 수뇌부 3명이 구속된 점, 수뇌부의 관심 및 지시에 따라 행한 점, 진상 규명에 상당 부분 협조한 점 등을 고려하여 불기소
 - 김○○ 8국장, 김○○ 운영단장은 핵심 간부의 위치에 있었고, 박○○ R2 수집과장은 불법감청에 관여한 정도가 비교적 중하므로 입건하되 부여된 직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부득이 본건에 이른 점, 국정원 직원으로서 업무 기여도 등을 고려하여 기소유예
 - 꽈○○ 8국장은 부임한 후 불법감청에 관여한 기간(100일)이 비교적 짧을 뿐만 아니라, R2 및 CAS 감청장비 폐기를 적극 건의하여 관철시킨 점 등을 감안하여 불입건
 - 김○○ 종합운영과장, 전○○ 종합처리과장은 불법감청에 직접 관여한 정도가 가볍고, 나머지 과장급 이하 실무자들도 상부의 지시에 따라 수동적으로 본건에 이른 점 등을 참작하여 각 불입건
- * 이수일 前 차장은 11. 20. 사망하였으므로 공소권없음 처리
- 국정원의 불법감청에 협조한 전화국 직원들은 국정원 실무자의 요구에 따라 불법감청에 수동적으로 협조한 점, 국정원 실무자를 처벌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하여 각 불입건

【안기부 도청 관련】

- 공운영 등 안기부 미림팀의 도청은 통신비밀보호법위반 및 도청장소에 대한 건조물침입에 해당되나 공소시효 완성
 - 공운영에 대하여는 공소권없음 결정
 - 미림팀원은 공소시효가 완성되어 따로 입건하지 아니함
- 미림팀을 구성한 오○○ 국장 등 안기부 간부들은 통신비밀 보호법위반의 공범이나 공소시효가 완성되어 따로 입건하지 아니함
- 김현철, 이원종에게 미림팀 도청자료를 유출한 김기섭, 오정소 등은 국가정보원직원법위반에 해당하나 공소시효 완성되어 따로 입건하지 아니함

나. 불법 도·감청자료 유출 및 내용 공개 관련 사건

순번	성명(연령)	직업	죄명	처분내용
1	공운영 (58세)	전 국정원 미림팀장	국정원직원법위반 공갈미수	8. 23. 구속기소 12. 1. 1심 선고 (징역 1년 6월)
2	박인희 (58세)	(주)LOTUS 사장	통신비밀보호법위반 공갈미수	8. 17. 구속기소 12. 1. 1심 선고 (징역 1년 2월)
3	이상호 (37세)	MBC 기자	통신비밀보호법위반	12. 14. 불구속기소
4	김연광 (43세)	월간조선 편집장	통신비밀보호법위반	12. 14. 불구속기소

다. “X파일” 내용 관련 고발 사건

- 금품 제공 부분은 사안의 성격상 정치자금법위반 등으로 의율할 사안으로 고발내용이 모두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공소시효가 완성되었거나, 정치자금법 개정 이전의 행위로 처벌이 불가하다고 결정하여야 하나, 고발인들이 특가법(뇌물)로 의율하여 고발하였으므로 통상의 고발사건 처리례에 따라 불기소 주문은 위 고발인의 고발내용에 대해 판단함

- 제15대 대선후보 관련 사건

- 제15대 대선 한나라당 후보 관련 피고발인 이회창, 이회성, 고흥길, 서상목에 대한 특가법(뇌물) 사건은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제15대 대선 여야 대선후보들에 대한 특가법(뇌물) 사건은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피고발인 전·현직검사들에 대한 특가법(뇌물) 사건은 혐의없음 (증거불충분등)

- 피고발인 강경식 전 경제부총리에 대한 특가법(뇌물) 사건은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피고발인 이건희, 이학수, 홍석현에 대한

- 특정가법(횡령) 사건은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뇌물공여 사건은 공소권없음

2. 향후 수사 사항

가. 노회찬 의원 도청테이프 내용공개 관련

- 노회찬 의원이 국회 일정 등의 사유로 출석일정이 조정되지 않고 있는바, 도청테이프 내용 인터넷 홈페이지 게재 경위 등 조사 필요

나. 2002. 한나라당 폭로 도청문건 유출 관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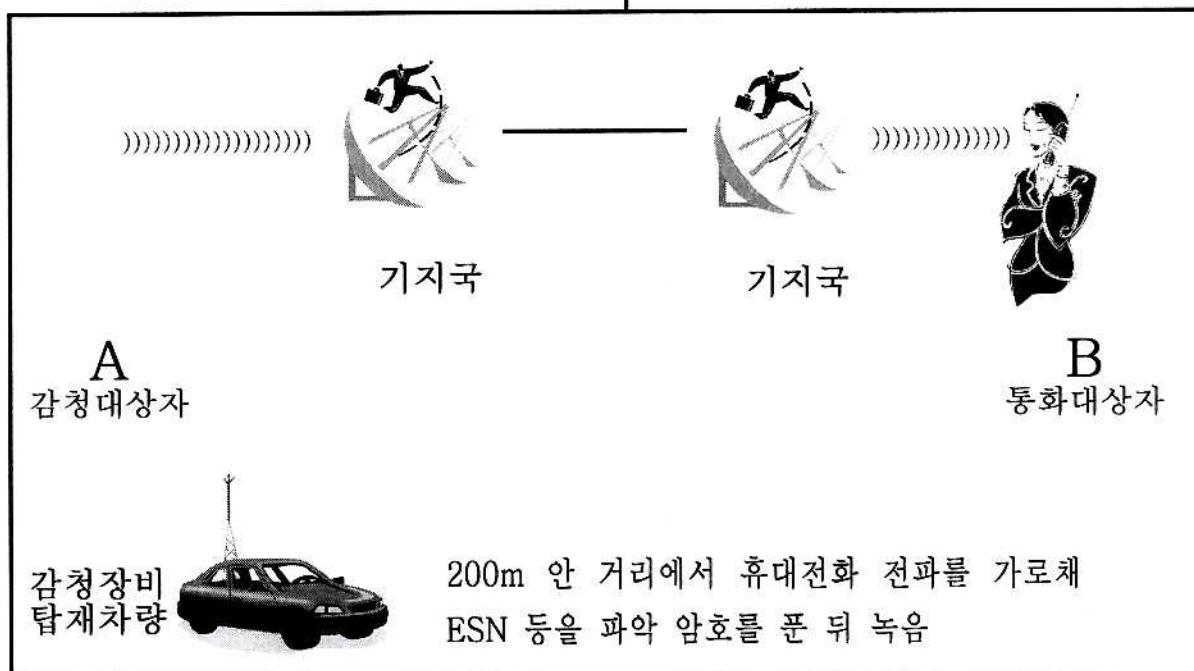
- 이부영, 김영일 전 의원 등이 검찰의 소환 요구에 불응하고 있는바, 한나라당의 불법감청 문건 입수 경위에 대한 수사 필요
- 국정원의 불법감청내용 유출과 관련, 국정원 관련자들을 계속 수사하여 국정원 문건의 유출 배경, 유출자 확인 등 계속 수사하여 규명할 계획임

CAS[이동식 휴대폰 감청장비] 감청 체계도

6국

감찰실

지부장



- 규격 : 가로 60cm, 세로 80cm, 높이 55cm
 - 무게 : 45kg
 - 국정원 8국 산하 기술연구단에서 개발, 관리
 - 국정원 6국, 감찰실 등에서 마약사범, 첨단기술 유출사범, 보안사고 조사, 정보수집용 등으로 사용
 - 번호 특정모드 사용시는 8국장 결재, 번호 임의모드 사용시는 차장결재, 국정원 주변 사용시는 원장 결재

별첨 3

국정원 종합처리팀장이 샘플로 작성한 통신첩보

△△뉴스 기자, 김갑동의원 대선경선출마

불확실성 확인

- △△뉴스 기자는 김갑동 의원의 대선 경선 출마 추진설을 입수하고, 김갑동 의원실 이철수 보좌관에게 사실 여부를 확인한 바
- 이에 대해 이철수 보좌관은
 - 김의원이 출마 의지를 갖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 전제조건으로 · 7~8월에 경선을 실시할 것
 - 총 유권자의 1%를 국민 경선제에 참여시킬 것 등을 당총재에게 제시할 방침이므로 아직 불확실 하다고 언급

*B 0510251010